

자동차보험 치료비 & 합의금 정보[2023년 개정 표준 약관 의거]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변경으로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치료자의 경우 치료비 및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보험사 담당자들이 합의를 종용하기위해 잘못된 정보로 후려치는 것들을 두고볼 수 없는 마음에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금 산정 등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피해보는 분이 없길 바라며, 다음 내용을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Q.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고, 본인이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1)차대차 사고로 정차중 후방추돌 등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 이므로,

충분히 치료받고 싶을 만큼 받으시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이륜차 운전자(오토바이,자전거 등),보행자일 경우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측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치료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3)골절 등 중상자의 경우

경상 환자가 아닌 중상자의 경우 당연히 치료 기간 제한이 없고,

치료비가 늘어날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4)차대차 사고 중 본인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일단 본인이 자동차상해(자상) 혹은 자기신체사고(자손)을 가입했는지부터

파악 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자동차상해(자상)가입자 -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보장 됩니다.

본인과실이 90%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치료비 및 합의금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하셔도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비가 늘어날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

자기신체사고(자손)가입자 - 치료비는 보장되나 합의금 산정 시 본인 과실 비율만큼 감가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상 가입자는 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합의금이 산정됨에 반해

자손 가입자는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 감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차이점.

그래도 4~6주 정도 입원 및 통원 치료 를 위한 치료비 및 합의금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본인과실 90%의 경우에도 자기 부담없이 대략 300만원 정도 치료비까지는 보장)

과실별로 치료비 산정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추후 포스팅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 과실 비율이 90%일 경우 300만원, 50%일 경우 480만원, 30%일 경우 730만원 이상 보장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차대차 사고에 있어서(보행자,이륜차 등은 X)

과실이 작던 크던간에 일부 있을 경우,

합의금을 받기 위해 결국 본인 자상이든 자손이든 본인 보험을 사용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아끼고 합의한다고 본인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합의금 자체가 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 보험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난 치료만 받고 합의금 안 받고 싶다 ->120만원한도내에서 원하는대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합의금을 안 받으면 내 과실이 있더라도 할증은 없습니다 .

난 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고 싶다 ->합의금을 받게 되는 이상 1만원 치료비가 발생하나

300만원 치료비가 발생하나 어차피 할증되는 금액 및 점수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할증은 보통 얼마나 되느냐? 이게 궁금해지죠.

보통 1점이면 7%정도 보험료가 오른다고 보면 되고, 그게 3년간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산기를 두들겨보시면 됩니다.

내 보험료의 7%가 상승, 3년간 유지하는 금액

VS 입원 및 통원 치료비+합의금 금액

합의금을 안받고서라도 할증은 피하고 싶다?

할증되더라도 치료비 및 합의금 받고 싶다?

어떻게 더 많고 적은가를 따져보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그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보험료가 연간 100만원이다.

7%면 7만원씩 3년간 더 내면 21만원 정도 손해라고 보면 되구요.

입원 및 통원 치료비+합의금이 보통 수백만원 대니까,

금전적으로만 비교하면 뭐가 나은지 판단이 설거라 봅니다.

물론 이건 예시일 뿐이고 본인상황에 맞게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는 사람들이 없고, 심지어 보험담당자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안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하죠. 그들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액 아끼는게 최우선이니깐요.^^

과실이 있는 차대차 사고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안입니다.

5)동승자 치료의 경우

운전자가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설령 있더라도 자동차상해에 가입한 운전자 라면,
동승자 역시 치료비 및 합의금 산정에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

6)상대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이런 경우는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 팩트입니다.

경상 진단 기준, 120만원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하시고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차대차 사고 환자 본인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이륜차,보행자는 해당X)

치료비 및 합의금 산정이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상 및 자손을 선택으로 가입했는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자상 자손 등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 과실 90%라고 가정했을때에도 총 120만원 정도의 진료비까지는 보장되며,
합의금 산정 역시 가능합니다.

단 합의금 산정 시 과실 비율만큼 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본인이 종합보험
가입했을 때보단 합의금 등 산정에서 불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에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결론 - 상대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인 경우에만

치료비가 늘수록 합의금이 줄어드는 게 팩트이고,

환자 본인이 책임보험 가입자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다소 차이날 수 있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 팩트 확실하게 인지하고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십시오!!!!

Q. 합의금 산정하는 방식, 공식 이 있나요?

A. 수십년간 보험사에서 합의금 산정해온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금=위로금+휴업손해금(입원시에만 발생)+통원 교통비+향후치료비
로 산정되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로금=정상 기준 대략 15만원 내외 로 결정

휴업손해금=입원시에만 발생하며, 22년 기준 입원 1일당 85000원 내외 로 산정(무직기준)

다만 본인 소득수준 에 따라 1일당 수가는 달라질 수 있음. 일당에 85%정도로 산정 됨.

통원교통비=통원 횟수만큼 회당 8000원 내외 로 산정

향후치료비=합의후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치료비

입니다.

위로금, 휴업손해금, 통원교통비는 치료한만큼 정해지는 영역이며,

향후치료비는 아픈 정도, 통증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현재 아픈 정도와 향후 병원 통원 및 치료비를 예상하여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보상 담당자와의 대화, 협의를 통해 금액적인 부분에서 가장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향후치료비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상황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기에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실없는 차대차 사고자(무직자) 10일 정도 입원했던 환자. 퇴원 후 5일 정도 통원 치료 후 합의금 산정을 한 케이스.

10일간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금=90만원

위로금=15만원

통원 치료 교통비=35000원

향후 10회 정도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향후치료비=50만원

총 $90+15+3.5+50=1585000$ 원으로 합의한 케이스.

이와 같은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참고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등에 의거하여, 사실에 기반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정된 약관의 팩트에 기반하여, 피해자가 절대 손해보지 않고 충분히 보장받는 치료 및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